

대전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나13644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나13644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7. 7 선고 2020가합1271 판결

###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김승휘, 황흥택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순

**변론 종결**2022. 8. 18.

**판결 선고**2022. 10. 13.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7. 7. 선고 2020가합1271 판결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300,000,000원 한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 구분 없이 '원고'라 한다)는 1996. 1. 26. 설립되어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 구분 없이 'E'라 한다)는 2013. 2. 4. 원고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세라믹제품, 연와 제조·판매 및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변경 전후 구분 없이 'C'이라 한다)은 2014. 12. 12. 설립되어 건축용 블록 및 벽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피고는 2018. 12. 18. C의 직원이던 J에 의하여 설립되어 건축용 블록 및 벽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나. 원고와 C 사이의 특허양도계약의 체결 및 금전 대여

1) 원고, E, C은 2016. 11. 15. "C이 보유한 'H'이라는 명칭의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일부(각 1%)를 원고와 E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원고가 C에 3억 원을 대여하되, 원고와 E가 C으로부터 구매하는 투수보도블록 대금의 30%를 위 대여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70%를 지급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특허기술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특허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특허기술양도계약서

#####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C이 원고와 E에게 특허권리(이하 '본건 특허'라 함)를 일부 양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본 계약 후 신기술(NET)인증 및 조달우수 제품 등록 추진을 통해 3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본건 특허의 표시 및 계약기간) 계약의 목적이 되는 본건 특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허번호: 특허 L
- 발명의 명칭: H
- 계약기간: 2016. 12. 1. ~ 2019. 12. 1.
-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 상호 해지 협의가 없을 경우 기간을 특허권 만료 기간까지 3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3조(양도의 범위)

- ① C은 원고와 E에게 본건 특허권리의 일부(각 1%)를 양도한다.
- ② C, 원고, E는 신기술(NET)인증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비용은 E가 부담한다.
- ③ C은 원고와 E가 조달우수제품을 신청하는 데 동의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 제5조(특허권의 권리 변동 사항)

C은 본 계약체결일 현재 본 특허기술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고 있거나 본 특허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 등을 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원고와 E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C은 원고와 E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제6조(특허권 양도대금)

- ① 원고는 C에게 제3조에 의한 본 특허기술을 양도하는 대가로 현금 3억 원을 대여한다.

② 원고는 C로부터 특허권리 일부 이전등록 및 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된 후 위 1항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원고와 E는 C에게서 구매하는 투수블록 구매대금 30%를 대여금에서 상계하고 차액을 지급한다.

④ C은 보증보험증권(3억 원)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 제8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해지 등)

①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C, 원고, E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의 이행이 전부 완료되기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 위반이 있을 경우, 타방은 그 일방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러함에도 그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전항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한 자는 이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C은 2016. 12. 1. 원고와 E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일부이전등록을 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6. 12. 6. 이 사건 특허양도계약에 따라 C에게 3억 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 E, C은 C의 상호가 변경된 이후인 2018. 8. 16.경 변경된 상호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제6조 부분을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특허양도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특허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 제6조(특허권 양도대금)

① 원고는 C에게 제3조에 의한 본 특허기술을 양도하는 대가로 현금 3억 원을 대여한다.

② 원고는 C로부터 특허권리 일부 이전등록 및 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된 후 위 1항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원고와 E는 C에게서 구매하는 투수블록 구매대금 30%를 대여금에서 상계하고 차액을 지급한다.

④ C은 선급금 보증보험증권(2억 원)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⑤ C은 특허 투자보증 보증보험증권(1억 원)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⑥ C은 계약 갱신 1개월 전 보증보험증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원고와 E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C과 피고 사이의 공장 매매계약 및 C의 폐업

1) C은 2018. 12. 13. 피고(당시는 피고가 설립등기되기 전이었다)와 사이에, 피고에게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논산시 M 가건물 135m<sup>2</sup>, 쇼트기 관련 설비를 제외한 공장 내 기계설비(지게차 포함)를 합계 18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매매목적물을 통틀어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936,000,000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자 주식회사 K,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        |                           |               |
|--------|---------------------------|---------------|
| 매매대금   | 18억 원                     |               |
| 계약금    | 1억 원                      | 2018. 12. 13. |
| 1차 중도금 | 1억 원                      | 2018. 12. 26. |
| 2차 중도금 | 222,694,348원              | 2019. 1. 30.  |
| 잔금     | 1,377,305,652원            | 2019. 1. 30.  |
| 기타     | 2차 중도금은 상계하도록 한다(제7조 참고). |               |

제3조(매매 범위) C은 피고에게 공장을 현 상태 그대로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는 공장을 매수한다(공장 내의 기계설비 중 쇼트기 관련 설비를 제외한 전체).

제4조(이행의무) C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

1. 잔금지급과 동시에 공장 토지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가등기 등 등기부상의 부담을 모두 말소한다.

2. 근저당권설정:

① 2018. 4. 30.1) 제12531호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금 936,000,000원

② 2018. 10. 12. 제27369호 주식회사 K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

제7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차 중도금액은 아래와 같이 승계 조건으로 상계 처리 한다. 만일 승계되지 않을 경우 피고는 C에게 2차 중도금을 지급해야 한다.

|    |                 |             |                    |
|----|-----------------|-------------|--------------------|
| 1  | N               | 16,671,380  | 지게차(차량번호 1 생략)     |
| 2  | O               | 11,249,418  | 지게차(차량번호 2 생략)     |
| 3  | P               | 16,773,550  | 화물차(차량번호 3 생략)     |
| 4  | 인천항만공사 조달금액     | 160,000,000 | 2019. 1. 2. 입금 건   |
| 5  | 수원시하수도사업 조달 선급금 | 18,000,000  | 2018. 4. 10. 선급금 건 |
| 합계 | 222,694,348     |             |                    |

2) 피고는 C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2018. 12. 26. 1차 중도금 1억 원을, 2019. 1. 29. 잔금 1,378,000,000원(위 잔금 1,377,305,652원을 백만 원 단위로 올림한 금액이다. 그중 196,304,781원으로 C의 주식회사 K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을 각 지급하고, 일자불상경 2차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C의 제3자에 대한 채무액 합계 222,694,348원을 승계한 뒤, 2019.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C은 2019. 3. 31. 폐업하였다.

#### 라.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9. 11. 18. C 및 주식회사 Q을 상대로 대여금 및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856), 위 법원은 2020. 4. 23. C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주식회사 Q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C, 주식회사 Q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C은 2019. 12. 3.부터, 주식회사 Q은 2020. 3.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5. 13.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2) 이 사건 관련 판결의 청구원인은 'C이 원고와 이 사건 특허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고, 주식회사 Q은 C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서 C이 계약이행을 지체하거나

불능일 때 이를 보증하겠다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 13,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 내지 7, 10, 20, 26,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직원 중 C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R, S는 2019. 3. 4.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피고의 직원인 T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R은 같은 날 피고 대표이사 J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의 공장 인수 사실과 피고의 피해 사실을 들었다. 또한 S는 2019. 6. 5.부터 피고 대표이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원고와 거래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업무담당자인 R, S가 2019. 3. 4.경 이 사건 공장의 매도 사실을 알고 C의 재산을 조사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취소원인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6. 17.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1, 12, 38,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S는 원고 및 E의 영업팀 이사로, R은 원고 및 E의 영업·시공관리 과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C과의 거래를 담당하였던 사실, S와 R이 2019. 3.경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매도하였음'을 알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9. 3.경 'C'의 이 사건 공장 매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원고가 2016. 11. 15. 이 사건 특허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특허양도계약 제6조는 "원고는 C에게 제3조에 의한 본 특허기술을 양도하는 대가로 현금 3억 원을 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6. 12. 6. 이 사건 특허양도계약에 따라 C에게 3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위 3억 원의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8. 12. 13. 이전에 비록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C이 이 사건 특허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해야 할 위 3억 원의 채무는 대여금채무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채무에 해당하고(2021. 1. 26.자 준비서면 2쪽 이하), 이는 이 사건 특허양도계약이 해제된 2019. 12. 2. 내지 이 사건 관련 판결 확정일인 2020. 5. 13.에야 성립하였으므로(2020. 10. 7. 자 준비서면 2쪽)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후에 성립한 채권에 해당한다. 위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3억 원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특허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제6조 제1, 3항에서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대여금 3억 원을 무이자로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되, 추후 원고나 E가 C으로부터 투수블록을 구매하여 물품대금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위 대여금에서 이를 상계한다."고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6. 12. 6. C에게 3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C에게 송금한 위 3억 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특허양도계약서의 문언 기재대로 대여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특허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이 향후 발생할 물품대금 채권 중 일부와 상계될 것을 전제로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되었다가, 원고가 2019. 12. 2. C에 대하여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상환을 청구함에 따라 비로소 변제기가 도래하게 되었고, 이후 이 사건 관련 판결의 확정으로써 원고가 이에 관한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사정 등은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또 "이 사건 대여금에서 C이 원고에게 납품한 물품대금이 상계되어야 하므로, 3억 원 전액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2020. 10. 7. 자 피고 준비서면 2쪽), C의 원고 또는 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 및 위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의 존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C의 채무초과 여부

### 1) C의 적극재산 가) 이 사건 공장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을 제3호증, 을 제17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U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14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감정평가사 V에게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V는 이 사건 공장(쇼트기 제외)의 가치를 2019. 1. 22.을 기준으로 1,569,486,760원으로 평가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총 1,13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공장 중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부분의 가치는 433,486,760원(= 1,569,486,760원 - 1,136,000,000원)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쇼트기 관련 설비

살피건대, 이 사건 공장 내 기계설비 중 쇼트기 관련 설비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서 제외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중고 쇼트기 설비가 약 1,100만 원에서 3,500만 원 사이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장의 쇼트기 관련 설비의 가치는 많아야 3,500만 원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위 설비의 가치가 5억 원이라고 다투나, 위 판단을 뒤집고 위 설비의 가치가 5억 원에 이른다고 인정할 만한 반증이 없다).

#### 다) 특허권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을 제2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특허양도계약의 목적물이 된 이 사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특허권도 C의 적극재산이 된다.

나아가 이 사건 특허양도계약에서 '신기술인증 및 조달우수제품 등록을 추진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므로 C이 이 사건 특허권을 실시하여 실제로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특허권의 지분을 일부 양도하여 원고와 E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음에도 그 대가가 3억 원의 이자 상당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특허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허권 양도에 대한 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는 3억 원 상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C에 지급한 3억 원은 대여금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대여원금 3억 원 전액을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로 볼 수는 없다).

#### 라) (차량번호 4 생략) 차량,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 (차량번호 5 생략) 승용차

살피건대, 갑 제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천안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은 폐차되었고,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는 P에 담보로 제공되어 피담보채무액이 16,773,550원에 이르며, (차량번호 5 생략) 승용차는 2006년 등록되어 평균매도금액이 1,025,000원이나 1년의 기간 동안 매도 건수가 2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차량들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마)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관련 법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어 공동담보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 (2) 조달청 채권

피고는 "C이 다수의 수요기관과의 조달계약을 통해 조달청에 대하여 606,561,150원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3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다수의 수요기관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충남 천안시, 경기도 가평군을 제외한 나머지 수요기관과의 조달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납품요구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실제 조달계약에 따라 C이 조달계약에 따른 물품을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조달청에 대한 606,0561,15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예금 채권

피고는 "C이 2018. 12. 31.부터 2019. 2. 1.까지 W회사(X)으로부터 6,500만 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Y조합계좌로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위 예금채권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7,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W회사(X)이 2018. 12. 31.부터 2019. 2. 1.까지 C의 예금계좌로 6,500만 원 상당을 물품대금으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있기는 하나, 나아가 위 물품대금 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인 2018. 12. 13.경 이미 발생한 채권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4) 인천지방조달청에 대한 채권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에 의하면, C은 적극재산으로 인천지방조달청에 대하여 160,000,000원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조항에 기재된

"인천항만공사 조달금액 160,000,000원"은 C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로 피고가 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바) 소결론

결국,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공장(433,486,760원 상당) 및 쇼트기 관련 설비(많아야 3,400만 원 상당), 특허권(가치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뿐이라고 할 것이다.

2) C의 소극재산 살피건대,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3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8, 9호증, 을 제3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N 주식회사 등에게 205,920,798원(피고가 2차 중도금으로 승계하기로 한 222,694,348원 중 앞서 적극재산에서 제외한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로 담보된 16,773,550원을 공제한 금액)의 채무를, Z회사(AA)에게 13,000,000원의 채무를, AB회사(AC)에게 액수 미상의 규사대금 채무를, AD회사(AE)에 대하여 53,210,972원의 운송대금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총 572,131,770원(= 300,000,000 + 205,920,798원 + 13,000,000원 + 53,210,972원) 이상의 소극재산이 존재한다.

3) 소결론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C의 사해의사 유무

1)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인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인 가격에 매각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20. 10. 7. 자 피고 준비서면 6쪽), C이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영업을 폐지하여 원고가 채권을 회수하기 곤란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라.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 대표이사 J는 C에 재직할 당시 '기술영업/이사'의 직함으로 원고 및 E와 C 사이의 자재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연락 및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C의 재정 상황은 물론 원고와의 거래관계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C의 자본총계는 2014년 2,900만 원, 2015년 2억 4,900만 원, 2016년 7억 7,100만 원,

2017년 1억 9,300만 원이고, 2015년 19,243,000원이던 영업이익이 2016년에는 22,347,000원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는 -578,271,000원이 되었다.

③ J는 C의 대표이사 AF과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채권자들과 채권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넘어가고 기존 소유주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들은 올 데가 공장밖에 없다고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고는 C이 기존 거래업체에게 원자재 값의 대금지급을 원활히 하지 못해 미수금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C은 최대한 거래대금의 지급함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피고가 본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6개월 내에 C의 기존 거래업체 대금지급 건 독촉으로 인하여 공장생산의 방해가 되었을 시 그에 따른 손해금을 배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개별적인 채무관계에 관하여 모두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C이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과 그 채무가 모두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들이 피고에게 대금지급을 독촉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은 보도블록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C이 운영하고 있던 유일한 제조시설이었으므로, C이 이를 피고에게 매각할 경우 C은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것이 명백하였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는 2019. 1. 30.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공장기계설비 및 검사설비를 대금 2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C의 조달청 계약을 승계 받았고, 그 과정에서 AF에게 C을 폐업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후 C은 2019. 3. 31. 폐업하였고, 피고는 C과 동일한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C의 기존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도 하였다.

####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

1)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30. 채권최고액 93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8. 10. 12.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9. 1. 29.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 3억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433,486,760원에 미달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3억 원 한도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소영**

**판사박진환**

**판사김병식**

**별지**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4. 30.로 봄이 상당하다.